

등록번호	대응총괄과-2990
등록일자	2023. 5. 12.
결재일자	2023. 5. 12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긴급대응담당	계장	대응총괄과장	119대응국장	차장 직무대리	소방청장
김보현	강윤구	최용철	김조일	배덕곤	남화영

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규정 전부 개정계획

2023. 5.



소 방 청

National Fire Agency **119**

「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규정」 전부 개정 계획

□ 개정 이유

-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시행(22.1.27.) 등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
- 동원령이 발령되는 대형재난 증가
 - 재난·업무 환경 변화를 반영, 관련 제도 개선 필요

□ 개정 내용

- 「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」으로 제명 변경 및 관련 규정 추가*
 - ※ 제1조 ‘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제11조의2제3항(인력장비동원)’, 제3조 ‘소방기본법 제3조(소방기관)’
- 동원 인력에 대한 근무교대 및 휴식 제공 조문 추가(제4조, 제5조)
 - 전국 및 시·도별 소방력 동원계획에 반영
- 소방본부장의 동원령 발령 요청 절차 및 동원자원 등록절차 마련(제8조)
 - 재난 개요, 필요 자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기재하는 요청서식 추가
 - 동원자원의 자원집결지 도착시 자원 등록 방법 구체화 및 의무화
- 자원집결지 운영 시 관리반 임무 명확화(제13조)
 - 자원통제, 임무지정, 근무편성을 통제단의 자원집결지 관리반 중점 임무로 지정
- 소방청장 동원령 발령시기 구체화(제16조)
 - 재난안전법 제49조(중통단) 및 제50조(지통단)에 따른 통제단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시 발령

□ 향후계획

의견조회	→	영향평가 및 법제심사	→	규제 심사	→	발령 · 공포
' 23.5월		' 23.6월		' 23.7월		' 23.8월 (예정)

참고

「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규정」 주요 개정 사항

○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

- 「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규정」 → 「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」

○ 관련 규정 추가(제1조, 제3조)

- 1조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의2제3항
※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범위 · 규모 등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이 정함
- 3조 「소방기본법」 제3조
※ 시 · 도 소방본부 등 소방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

○ 동원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 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(제4조, 제5조)

- 국가 소방 동원계획 수립, 시 · 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

○ 자원집결지 관리반 임무 명확화(제13조)

- 동원 소방력의 등록 · 해제, 임무지정 및 근무편성 추가

○ 시도본부장의 동원령 발령 요청 절차 구체화(동원 요청 서식 추가, 별표 4)

○ 동원 자원 재난현장 등록절차 의무화 추가(제8조)

○ 제16조 소방청장 발령시기 조문 신설

-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발령 가능

○ 조문 위치 변경

- 동원령 발령(제4조 → 제8조)
- 시 · 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(제6조 → 제5조)
- 동원령 기준(제7조 → 제9조)
- 동원대상(제8조 → 제10조)
- 출항거점 지정(제10조 → 제6조)
- 소방력 공백 방지(제12조 → 제7조)
- 동원 훈련(제13조 → 제15조)
- 자원집결지 선정(제14조 → 제12조)

- 자원집결지 운영·관리(제15조 → 제13조)

- 비용부담(제16조 → 제14조)

○ 제9조 전문인력 동원 조문 제10조(동원대상)과 통합